

제·개 정 예 고 문

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「사규관리규정」제10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7월 2일
경기도시공사사장

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

1. 제개정 이유

- 공사 신규투자사업의 심의기준 일부항목의 내용 구체화

2. 주요내용

-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신규투자사업 심의기준 상 정책성 분석사항에 ‘지역 균형발전’ 항목 추가
 - 공사 신규투자사업의 심의기준 중 정책성 분석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위해 ‘지역균형발전’ 사항을 예시로 추가

※ 정책성 분석 :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, 국가/도 등 상위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,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평가
--

3. 의견제출

이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시공사사장(기획홍보처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사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주 소 : 우 441-836 /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도시공사(5층, 기획홍보처)
전 화 : 031-220-3068
팩 스 : 031-220-3059
이메일 : shs7@gico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붙 임 1.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(일부) 개정안 1부.

규정 제 호

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

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6조(심의기준)

①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
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
3. 신규투자사업의 기본구상, 평면계획 등 개발계획
4. 신규투자사업 규모의 적정성
5. 재무성 및 자원조달계획 등의 수익성 분석
6. 수요·편익추정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
7. 일자리 창출, 지역균형발전 등 파급효과를 포함한 정책성 분석
8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타당성 검토 이행 적정성
9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<19. 7. 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